

나.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신설

- (1) 유전자재조합기술에 의해 얻어진 미생물을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「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.

다. 스모크향의 사용기준 개정

- (1) 식육가공품, 어육가공품, 소스류, 과자(스낵과자에 한함)에만 사용하며, 착향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됨.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162호, 2009. 06. 11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제조 시 인쇄잉크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「벤조페논」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하고,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하던 표백제인 「이산화황」과 곰팡이방지제인 「올쏘-페닐페놀, 치아벤다졸, 비페닐, 이마자릴」의 용출규격을 아이스바, 어묵에 사용되는 나무막대 등 목재류로 확대·강화하고자 「기구 및 용기·포장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용기·포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

가. 일반기준 중 벤조페논의 용출규격 및 시험법 신설 [안 제7. 1. 9) 및 제7. 3. 1. 5)]

- (1) 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인쇄 시 인쇄잉크의 성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벤조페논이 식품으로 이행되는 것을 관리하기 위한 규격이 필요함.
- (2) 인쇄잉크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벤조페논의 용출규격 신설
- (3) 외면에 인쇄하여 사용하는 기구 및

나.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중 안티몬의 용출규격 강화 [안 제7. 2. 1. 1-5. 3)(4)]

- (1) 합성수지제인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제조 시 사용하는 안티몬 용출규격의 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함.
- (2)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중 안티몬의 용출규격 강화
- (3)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 사용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다. 아크릴수지, 폴리메타크릴스티렌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-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스티렌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용출규격 강화 [안 제7. 2. 1. 1-10. 3)(4), 제7. 2. 1. 1-19. 3)(4) 및 제 7. 2. 1. 1-29. 3)(4)]

- (1) 합성수지제인 아크릴수지, 폴리메타크릴스티렌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-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스티렌 제조 시 사용하는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용출규격의 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함.
- (2) 아크릴수지, 폴리메타크릴스티렌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-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스티렌 중 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용출규격 강화
- (3)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 사용하는 아크릴수지, 폴리메타크릴스티렌 및 메틸메타크릴레이트-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스티렌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라.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중 PCBs의 재질규격 강화 [안 제7. 2. 4. 2)(1)]

- (1)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재질 중 PCBs 잔류량의 국제규격과의 조화가 필요함.

- (2)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중 PCBs의 재질규격 강화
- (3)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 사용하는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에 대한 안전성 확보

마. 목재류 중 이산화황, 울쏘-페닐페놀, 치아벤다졸, 비페닐 및 이마자릴 용출규격에서 나무젓가락에 한한 단서조항 삭제 및 시험방법 개정 [안 제7. 2. 6. 2)(3)~(7) 및 제7. 3. 7. 1)(3)~(4)]

- (1) 목재류 중 이산화황, 울쏘-페닐페놀, 치아벤다졸, 비페닐 및 이마자릴 용출규격의 나무젓가락에 한한 단서조항 삭제
- (2) 나무젓가락 이외에 아이스바, 어묵에 사용되는 나무막대, 나무주걱 등의 목재류에 대해서도 이산화황, 울쏘-페닐페놀, 치아벤다졸, 비페닐 및 이마자릴 용출규격 신설
- (3) 식품용 기구 및 용기·포장으로 사용하는 목재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